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 심사보고

1998. 11. 6
교육사회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1998년 10월 2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8년 10월 27일
- 다. 상정일자 : 1998년 11월 6일
(제154회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가. 제안이유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 “설치”에 관한 사항이 충청북도 행정조직에관한조례로 흡수·통합되면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 (안 제1조)
- 각종 검사·시험의뢰시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 징수방법, 성적서 교부방법 등 명시 (안 제2조 내지 제4조)
-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문기)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난번 조직개편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및운영조례중 “설치”에 관한 사항이 충청북도 행정조직에관한 조례에 흡수·통합되면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및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